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상)

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제 3 조 (주관)

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독 및 주관 실시한다.

제 4 조 (교육회기 및 교육시간)

1.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2.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교육기관)

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
1. 분과위원회
2.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

제 6 조 (연수교육의 인정한계)

1.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 1)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
 2) 별표 1 (연수교육 인정한계)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, 실습 및 학술대회
2. 자격인정시험 시에는 별표 4 (수련내용)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.
3. 자격갱신 시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(연수교육, 학술대회 및 논문평점)에 따라 인정한다.

제 7 조 (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)

1. 각 연수교육 기관은 연수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(연수교육 세부계획서) 서식에 따라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연수 교육을 신청하고, 각 분과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.
2.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20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제 8 조 (등록회비)

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,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9 조 (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)

1. 연수교육 기관은 연수교육 이수한 참석자를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수교육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.
2.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4주(28일) 이내에 결과보고(결과보고서, 평점 이수자내역서)를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이수내역확인서 발급)

학회는 제9조 (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)에 따라 이수내역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.

제 11 조 (평점)

연수강좌 및 실습의 평점은 1시간당 1평점을 인정하고, 1일 교육 상한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.

제 12 조 (제재)

1.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교육 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, 제재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.
 1)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
 2) 연수교육에 관하여 학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
 3)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
 4)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
 5)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 결과 당초의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
 6)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 신청을 할 수 없다.
3.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지침으로 정한다.

제 13 조 (운영 세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4 조 (부칙)

1.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연수교육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아니한다.
3.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칙은 2018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본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본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9. 본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